

방과후 아동지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¹⁾

장귀순²⁾

요 약

아동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우리 나라 헌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아이들이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또한 우리의 몫이다. 왜냐하면 아동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이다.

최근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방과후 아동이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경험하던 지역사회와의 교류기회를 박탈당한 채 생활하게 되었다. 결국 홀로 방치된 자기보호아동은 비행 환경에 쉽게 노출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이제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중요성이 개인적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방과후 가족을 대신하여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고 교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70년부터 방과후 아동지도는 대도시 빈민지역에서 지역사회운동가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방과후 방치된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학령기 아동들과 취업모 및 일반 부모들에게까지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가족복지와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사회복지관과 민간공부방을 비롯하여 초등학교와 영유아보육시설에서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마다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운영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의 성격규정과 발전방향은 시작단계부터 그만큼 중

1)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임.

2) 건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주임교수

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방과후 아동지도는 학령기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야 하며,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은 아동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행복한 경험을 하는 곳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동들이 행복한 경험을 하고, 건전한 아동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체제가 요청된다. 정부와 교육부가 후원하고 조직력을 갖춘 건전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기업과 지역사회 후원자가 지원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 서 론

1. 연구 목적

핵가족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변화에 따라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육·육성하는 보육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 이에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영유아보육사업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방과후 아동 보육사업 활성화 대책’(1996.6)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여성개발원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 개발과 시범사업운영, 현장에서의 사례연구 등 다양한 노력의 결과 현재 전국에 약 1,400개소(사회복지관 273개소, 어린이집 784개 초등학교 33개소, 공부방 280개소)에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전국에 약 1만 9천여 개의 시설에서 69만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육서비스는 주로 영유아에게 집중되어 있어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지도는 미흡한 실정으로 방과후 아동지도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법적인 마련은 극히 미비한 상황에 있으며 특별히 기관이나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여전히 학교교육의 연장선에서 학습지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규교육 기관에서의

일과 이외의 시간 동안(학교 수업을 마친 후, 방학 중, 학교 시작 전, 휴일)에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연령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하여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도모하는 아동 복지 서비스로(김재인, 1996; 서영숙, 박영애, 허정경, 2000; 이옥과 노성향, 1996)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하고 방과후 지도사업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초등학교 아동을 중심으로 방과후 아동지도시설 확충사업을 수립·추진하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령기 아동에 대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의 성격규정과 발전방향은 시작단계부터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방과후 아동지도는 학령기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발전해야 하며,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은 아동의 관심과 흥미가 있는 행복한 경험을 하는 곳으로 발전해야 한다.

아동들이 행복한 경험을 하고, 건전한 아동문화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구성원 모두의 협력체제가 요청된다. 정부와 교육부가 후원하고 조직력을 갖춘 건전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며 기업과 지역사회 후원자가 지원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은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소규모 핵가족화되면서 가족 내에서 가질 수 없는 사회적 사고와 경험들을 공동체 속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 차원의 보육시설이 아닌 모든 사회계층에 적합한 다양화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서 보다 더 확대하여 전체 학령기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과후 아동지도의 질적인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발전과 더불어 질적 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동을 위한 참다운 아동문화 공간으로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정부, 학부모,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방과후 아동지도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이며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지 하는가?에 대하여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방과후 아동지도는 현재 학령기 아동들과 취업모 및 일반 부모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가족복지와 아동복지의 차원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다. 최근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방과후 아동지도의 중요성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었다. 정부와 민간기관을 포함한 공식·비공식적인 아동복지체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구범위 및 방법은 방과후 아동지도의 주된 대상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관, 초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민간공부방에서의 방과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제5장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으로 방과후 아동지도는 취업모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아동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이론으로 방과후 아동지도의 환경적 요소와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욕구 및 경향을 살펴보고 먼저 연구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회복지관, 초등학교, 영유아보육시설, 민간공부방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할당영역, 급여 영역, 재정영역, 전달영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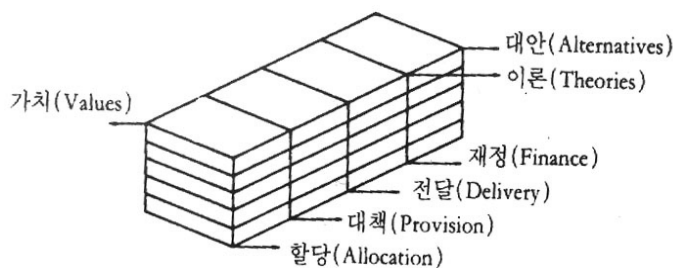
제4장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 해결책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으로서 정부와 민간기관 그리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주민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5장은 결론으로 방과후 아동지도가 성공적인 지역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사회구성원 각각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여 모범적인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분석의 틀

본 논문에서는 Gilbert와 Specht(N.Gilbert & H. Specht, 1974) 분석틀을 기준으로

삼아 현존하는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이는 ① 사회적활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② 할당되어진 사회적 대책의 형태는 무엇인가? ③ 이들 급여간의 전달의 전략은 무엇인가? ④ 이들 급여의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가를 연결하여 이들 선택의 차원을 다음의 3축으로 연결하면 첫째, 각 차원 내에서의 대안의 범위, 둘째 이들 대안을 지지해주는 사회가치 셋째, 이들 대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론 혹은 전체의 축으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선택의 차원

이를 준거기준으로 삼아 분석하면

첫째, 할당영역으로는 대상자를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볼 것이냐 전체적으로 볼 것인지 구분하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보는 관점에 따라 공정한지 여부로서 적용대상자의 자격과 범위에 따른 원칙으로 방과후 보육은 1996년에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교과목 과정에 ‘방과후아동지도’ 과목이 삽입됨에 따라 시행되고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 프로그램은 여타 항목(교사자격, 아동대교사비율, 소관부처, 근거법, 시설확충방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 하겠다. 현장과 외국의 실태를 살펴 볼 때, 우리에게 바람직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곳’, ‘아동의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활동’, ‘핵가족화된 사회구조상 공동체의식 함양’을 모토로 해야한다.

둘째, 급여영역에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은 적절한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한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전문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수혜대상자인 아동을 적절하게 보육하고 지도하는 것으로 방과후 아동을 위하여 먼저 보육시설의 법적 근거를 다양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선 방과후 보육법을 새

로이 제정하기보다는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시 방과후 보육 관련 별도의 방과후 보육 조항을 명시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그 내용은 영유아 보육을 위한 내용에 준하는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전달영역에서는 서비스의 접근은 누구중심으로 진행되는지?(행정가, 클라이언트)등에 관점을 두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전달체계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방과후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에 비해 현재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론 제도화 과정에서 제고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분하였다.

넷째, 재정영역에서는 재원조달방식은 어떻게 구성하고, 재원규모는 얼마나 되며, 바람직한 재원조달을 위한 대책 등을 무엇인지를 통합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정착과 법의 개정, 정책이 보완되어 도달하게끔 하는 메카니즘으로 우리나라 방과후 아동지도의 활성화 방안에 접목시켜 연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방과후 아동지도의 개선방안

1. 할당영역

1)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확보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따른 기관의 운영 중 시설확보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희망하는 장소에 대한 의견조사결과 아동은 1위 초등학교(60.2%), 2위 별도의 전용시설(21.0%), 3위 사회복지관(4.9%)이며 학부모도 1위 ‘초등학교’(60.8%), 2위 ‘별도의 전용시설’(14.2%), 3위 ‘사회복지관’(11.3%)으로 아동과 동일하다. 초등학교를 가장 선호하고 있어 초등학교의 대대적인 개방방안이 필요하며, 2위의 전용공간에 대해서는 16개시에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종합센터 확충이 필요하다.

전국 초등학교 5,384개(2002. 4월 현재) 중 서울지역 35개교 37학급(7,760명)과 인천지역 41개교에서만 운영중이다. 1개교마다 1개 방과후교실 운영할 경우 10만명(5,000개×20명=100,000명)이 이용 가능하다. 아동, 학부모 모두 원하는 ‘학교 방과후교

실 개설'이 장애요인 분석이 필요하며, 안전문제인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 부모 간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2001년 총 아동중 1~3학년의 저학년아동을 대상으로 보고, 여기에 저소득층비율과 보육 요구율을 적용, 5만여명을 필요한 아동수로 추정하고 있다.

보육요구율 충족 목표치를 2010년 까지 100%달성하는 것으로 잡고, 2010년까지 605년까지(현재 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수 26개 제외, 579개 확충방침)를 확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확충안은 첫째, 요구대상아동을 저학년으로 국한시킨 점, 둘째, 영유아 보육 요구율을 그대로 적용, 현실적인 수요요구를 수렴하지 못한 확충계획으로 2010년까지 국공립시설에 5만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빈약한 계획으로 본다.

2) 지도대상 아동시설의 활성화

방과후 아동보육은 영유아보육과 별도의 추진체계, 예산 배정, 운영관리가 요구된다. 방과후 아동보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시설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과, 새로운 기준으로 시작되는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지역별 정기적인 방과후 아동보육 수요조사 및 기관실태조사로 지역의 수요충족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한 계획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시설예산사용 및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할 것이다.

방과후 시설 및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항목, 평가주체가 정해져야 하며, 평가결과는 방과후 아동보육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신속히 반영되어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분야 및 세부항목을 설정해야 하며, 평가주체는 보건복지부 보육과, 지방자치 단체의 아동보육과, 학부모, 교사협의체, 방과후 프로그램 연구진, 방과후 아동보육학회, 관련 시민단체의 분과위원회 등 해당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 설치기준 완화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설·설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 즉, 아동 1인당 1.1평을 확보해야 하며 보육시설에 부설로 설치할 경우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취학 아동의 정원은 1개반에 30명으로 1인의 보육 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과후 아동 보육은 발달단계가 서로 다른 6-12세의 아동을 모두 포함하므로 1개반 최소 15명 이상이면 시설인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동일 학년 아동은 동일반으로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사 배치기준의 합리적 조정

방과후 아동 지도시 한 사람의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가 30명의 아동을 보호·지도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인의 아동지도사가 아동을 보호·지도할 수 있는 범위는 아동 약 10-15명에 이르고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자원 활동자의 보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방과후 아동보육을 할 수 있는 교사 배치기준을 교사 1인당 아동 10-15명 선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는 아동의 질적인 차원에서 개별적, 특성적으로 보호·지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2. 급여 영역

1)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발전 방안

방과후 아동보육의 초등학교 아동의 발달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아동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지역별, 개인별, 시설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표준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즉, 방과후 아동보육 공통프로그램은 ‘안전한 보호’, ‘숙제지도 및 보충학습’, ‘생활지도’, ‘특기 교육’, ‘점심 및 간식 제공’ 등에 중점을 두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적 특성 및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① 학년별 프로그램, ② 활동별 프로그램, ③ 지역특성별 프로그램, ④ 시설특성별 프로그램 ⑤ 계절별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여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하는 교사, 시설 환경 등에 관한 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증제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할 수도 있으며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연구기관을 통한 관리도 가능하다. 다만,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다양한 연구기관과 대학 등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를 훈련하며,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사회의 다양화에 걸맞는 것일 수 있다.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방과후 아동보육 자문 및 프로그램 개발단, 평가단 구성하고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

2) 아동지도 전문성 제고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하여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직무분야를 ‘전문교육분야’로 새롭게 신설하고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자격명칭을 확정하고 등급을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는 현장에서는 ‘교사’로 명명되며, 현장 활동가와 학부모에게 익숙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관련 법 및 규정을 제정 신설하고,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법 및 규정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과정 설치에서는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양성 교육 및 재교육과정 설치하고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방과후 아동보육’ 교과목의 시간을 늘리고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과정시간 대폭 확대 실시한다.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하고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위상, 개념에 대한 대 국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시 기존 교육경력 모두 인정해 줘야 한다.

3. 재정 영역

1) 국공립시설 보육시설을 통한 공보육 확대

보육의 공공성이란 일차적으로 아동보육 문제를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한다는 국가 개입의 당위성에서 비롯되며 사회적 연대 하에 국가가 보육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001년 12월

전국에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18,109개소에서 602,979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어 보육시설수에서는 93.3%, 보육아동수에서는 85.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외면한 공보육의 확대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정부에서는 공보육을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을 통하여 확장하려 하지만 국공립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약8%로 획기적인 공공보육시설의 확장 계획 없이는 공보육의 비율을 높이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행·재정지원을 통하여 공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01년 중앙정부의 전국보육시설지원사업에 대한 보육예산은 국고 1,696억원과 지방비 1,904억원 그리고 수익자 부담금 249억원을 포함하여 3,84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중 약 57%가 정부지원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로 지출되면 39%가량이 저소득 아동지원, 보육료와 5세아 아동 무상보육료로 지출되며 나머지 8%가 민간시설지원 교재교구비와 정부센타운영비, 보육시설기능 보강비로 지출되어 중앙정부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민간 보육시설은 영리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가정대로 민간 보육시설이 영리 기관이라면 사립유치원처럼 보육료에 대한 규제 등을 없애고, 보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들이 보육료 부담능력에 따라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사업이 공적복지 서비스의 사회시장 성격의 기본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이다. 그러므로 영유아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던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공보육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의 질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할 때 모든 영유아들이 효과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평성 있는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차등보육료 도입

(1)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도입

차등보육료라 함은 소득 및 재산 수준별로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을 차등화하고 그 차액을 국고 혹은 지방비로 충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차등보육료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석무(1994)는 보육서비스는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기회 균등의 경제적 특성을 지닌 서비스로서 공동체의 모든 계층의 아동이 적정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든 비용 중 사적 재원으로 충당하기 부족한 부분은 공공재원으로 충당하되 그 공공재원은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극빈층과 상대적 저소득층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반 조세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나머지 계층은 사적인 이용료로 충당하게 하여 소득을 고려하여 차등 있게 지원해야 한다.

(2) 보육시간에 따른 차등 보육료 도입

보육사업은 저소득층만의 욕구는 아니며 또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인 측면보다도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동복지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아동에 40%가 14시 이전에 귀가하는 반일제의 형태이며, 서문희(2001)의 연구 ‘국공립보육시설경영개선방안’에서도 국공립시설의 아동 35%가 비 취업모의 자녀를 나타내고 있어, 이제 보육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 개념의 종일제 보육 개념이 아닌 아동의 복지적 관점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야간 보육료와 기준시가 초과 보육료에 대한 적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모두 시간 초과분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반일제로 보육되고 있는 유아들에 대한 배려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제 차등 보육료가 도입될 경우 표준보육료를 전액 수납하지 못하는 민간가정보육시설에 어려움이 더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차등보육료에 대한 제한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국공립·민간·가정보육시설별로 차등 적용되는 보육료를 모두 통일하여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자료(소득증명, 의료비 납부증명 등)를 근거로 하여 아동별로 차등보육료를 책정하며, 둘째 현재 반일제로 보육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하여 보육시간에 따른 보육단가를 산출하여 차등 부담하게 한다. 즉 보호자의 소득과 아동의 보육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3) 행·재정 지원 및 서비스 개선

행정지원은 전담 부서를 선정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업무의 공공화, 활성화를 위해

전담 부서 선정은 필요하다. 적합한 부처로 보건복지부내에 방과후 아동보육과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행정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과후보육위원회’ 구성으로 관계부처간 방과후 아동보육의 연계·협력체계 구축하고 ‘방과후보육정보센터’와 지역별 ‘방과후 시설협의체’마련으로 정보·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적 지원방안으로는 재정지원에서 사회적 부담률이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2003부터 2007년까지 정부 : 학부모 부담율을 60 : 40, 2008년 이후 정부 : 학부모 부담율 70 : 30으로 상향조정하고 보육료 지원 대상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아닌 비취업부모의 아동인 경우라도 보육료를 지불하기 어려운 아동을 동사무소에서 파악, 보육료 지원과 고용보험에서 방과후 아동보육료 지원을 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전달 영역

1) 방과후 아동보육의 제도개선

방과후 아동보육이 제도화를 위해서는 첫째, 방과후 아동보육의 공보육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둘째,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넷째,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의 양성 및 활용방안이 미비하다.

(1)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법·제도

방과후 아동보육의 다양화 시도로는 타 활동과 연계하고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의 연령이 12세 이하를 15세 또는 18세 이하로 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하며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 법 제정에 있어 1) 단계별 방과후 아동보육 관련법을 정돈하여야 한다. ① 방과후 아동보육법을 제정 ② 아동복지법 개정 ③ 영유아보육법의 「영유아·아동보육법」으로 개정 과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인 ‘청소년 기본법’, ‘사회복지법’, ‘평생교육법’에 ‘방과후 아동보육’항목을 삽입 조치해야 한다.

방과후 아동보육제도 개선방안으로는 관련부서 설치 및 담당인력 배치,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지역별, 대상별 차별화 방안, 시설 설치기준의 융통성 부여, 지원금(중식비, 학습지 구입비 등)의 현실화, 담당교사의 자격 및 지위 인정방안, 아동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 명료화와 제도화, 질적 아동보호 장치 마련 및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2)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의 확대 및 운영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대방안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전용시설로 ‘아동의 집’(가칭)과 ‘아동회관(가칭)설치’ 하고 신설이 필요한 방과후 아동보육 시설과 신설에 따른 소요 예산과 또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신설 목표 설정과 방과후 아동보육을 위한 민간시설 개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개방으로 첫째,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의 교육청 단위별로 초등학교 1개소 이상의 학교를 ‘방과후 아동보육 시범시설로’ 지정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 지원토록 해야 한다.

둘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시범시설로 운영할 경우, 빈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으나, 교문 옆에 교실을 건립하여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마련,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셋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학교장이 시설장을 겸하되, 학교장에 대해서는 방과후 아동보육 시범시설을 운영하는데 대한 혜택(아동의 안전사고에의 대책방안 마련, 승진가능점수배당)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방과후 아동보육을 담당할 보육시설을 별도로 둔다.

다섯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교실의 환경은 영유아 아동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같이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갖추도록 한다.

여섯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와 협의 하에 시설위탁을 하도록 한다.

일곱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경우, 아동들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연계 방안을 구축한다.

여덟째, 단위학교에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활용한 아동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바, 지역 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등을 통해 아동보육의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한다.

아홉째, 단위학교 평가지표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유무'를 한 항목으로 삽입한다.

공공시설 개방으로는 첫째, 공공시설 평가지표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유무'를 항목으로 삽입한다.

둘째, 공공시설 활용 시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셋째, 공공시설 개방 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넷째, 공공시설 개방 시 방과후 아동보육교사를 배치한다.

다섯째, 자체평가를 통해 활성화를 기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민간시설 개방은 첫째,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둘째, 프로그램 지원하며 셋째, 주기적인 자체평가를 도모하여 운영 활성화를 기한다.

(2)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1)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자질향상

교사는 아동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교사의 자질과 노력 여하가 교육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방과후 아동지도의 질 역시 방과후 아동 지도사의 아동간의 상호 작용의 질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성공적인 방과후 아동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잘 알고, 프로그램 계획·실행하며 동료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보육교사가 방과후 아동 보육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위치에 있으나, 연간 40시간의 보수 교육만으로 학령기를 중심으로 한 이론 및 실무능력을 갖추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동지도가 단순 보호에서 벗어나 교육, 보호, 사회적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아동지도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아동지도사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고가 독립적이어야 하고 안정된 직업과 지속적인 능력 강화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과 가족, 교육 이론, 실무 등의 교육이 진행되려면 최소한 150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된다(정민자, 박초아, 이진숙, 1997).

또한 방과후 아동지도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사회와 아동 및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며 교사 자신의 지속적인 자기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보수 교육이 마련,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방과후 아동 보육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보수 교육 외에 프로그램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직원 개발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처럼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직업적인 전문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자체 프로그램과 회의를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① 보육 시설 내 종사자들의 회의
- ② 활동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회의
- ③ 연수와 훈련 프로그램
- ④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차원의 워크숍
- ⑤ 사례별 상담 시간

(2)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처우개선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에 대한 자격 기준 및 권리 보장에 관한 세부 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영유아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급 대학 이상 유아 교육 및 아동 복지관련 학과 전공자만 방과후 아동지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그 이외의 교육 수료생에게는 시설설치 및 지도 자격을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보수는 매우 열악한데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1급의 보수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 보수의 46.6%에 불과하여 보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아동지도사 보수 규정의 봉급표 상에서는 30호봉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30년 이상 장기 근속자나 18년 근속자들이 확일적으로 최고 연봉 18호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최고호봉으로 18호봉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봉급표상에 나타난대로 30호봉까지도 확대해야 하는 보수 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표갑수, 1993).

영유아 보육교사인 경우 영아반 수를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의 90%까지 지원받는데 비해 방과후 아동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5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방과 후

아동 보육료로 충당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시설장은 방과후 아동지도교사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미흡과 낮은 보육료 책정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방과후 아동 지도를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유아 보육 교사 수준으로 확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과후에 성인의 보호없이 지내는 자기보호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방과후 아동지도 내지 보육에 대한 관심과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의 방과후 아동지도 수준을 보다 높이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보육사업추진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중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실태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과후 아동지도가 가지는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첫째, 법적·제도적 문제로서 방과후 아동지도와 관련하여 영유아 보육법에서 입소대상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하여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관련 법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향후 1~2년 후 관련법령을 보완 검토하고자 하는 정부의 추진방침에 의해 현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학령기 아동의 다양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셋째,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에 대한 자격지급 및 권리보장에 관한 세부기준이나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유아교육 및 아동복지 관련학과 전공자 이외에는 시설설치 및 지도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넷째, 보육시설에서의 방과후 아동지도는 기존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조기에 이 사업을 정착할 수 있지만, 영유아 보육사업과 달리 시설운영 및 방과후 아동지도 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방과후 아동지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첫째로 방과후 아동지도에 관한 법·제도적 조치를 제시하였다(제4장 제4절 : 63). 즉 법적 조

치로서는 방과후 아동지도교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시설설치를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도개선으로는 소규모로 방과후 아동지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가기준의 완화와 교사배치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모형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15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필요하며 자체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회의 계획 등을 제시하였고, 봉급표상의 보수규정의 개정과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제시하였다.

넷째로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비 관리체계의 합리적 방안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확대 및 교육비의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방과후 아동지도는 더 이상 가정만이 책임이 아니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보육정책은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부모와 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양육한다는 적극적인 시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그동안 방과후 아동지도는 그 수요와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여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방과후 아동 보육사업이 영유아보육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성과는 미비한 상태이다.

앞으로 방과후 아동지도는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미비점으로 보완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에 확고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육사업 당사자는 물론이고 학계와 전문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할 때 고려하여야 할 방과후 아동지도의 대상과 관리, 종사자, 시설, 재정, 사무, 건강 및 안전관리, 부모참여와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 실제적 운영측면에 방과후 아동지도가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방과후 아동, 시설과 설비, 프로그램, 종사자의 4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중에서도 종사자는 이 모든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의미하는 결과를 창출하고 보육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 방과후 아동지도 실시를 원활히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될 부분으로 시설의 설

치 및 관리는 법적, 물리적으로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영역과 관련하여 방과후 아동지도에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은 방과후 아동지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인프라를 총괄하여 지역사회와의 바람직한 연계를 구축해야 하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이 대부분 교실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므로 발달기 아동에게 필요한 대·소 근육 발달이 절실히 이루어지도록 현재 필요공간이 축소되어있는 동사무소나 각 지역의 종교시설 등 공공장소를 활동영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기관과의 체계적인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방과후 아동지도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권오인(2002),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부모 만족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언주 외 공저(1998), "우리 아이 EQ높이기", 서울 : 학지사.
- 김은경(2001),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실태와 그 개선방안-서울시내 사회복지관은 중심으로-, 동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91), 창의성의 심리", <창의성을 높이는 교육>. 대한교육연합회편 1985.1. 《천재, 그 창조성의 비밀》. 서울 : 교보문고.
- 노성향(2001), 방과후 아동지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동국대학교사회조사연구소(1993). 유럽 공동체 12개국의 탁아현황과 탁아정책. 1985-1990.
- 문정화·하종덕 공저(1998), "또 하나의 교육 창의성", 서울 : 학지사.
- 변해숙(2000),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만족도,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영숙 외 2명(1996), "프로젝트중심 방과 후 아동지도", 서울, 양서원.

- 서영숙 외 2명(1999), "방과후 아동지도 교육 환경 평가 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4권 제2호, 열린유아교육학회.
- 서영숙 외 2명(2000), "방과후 아동지도 시설유형별 교육환경 비교", 한국아동학회지, 제21권 1호, 한국아동학회
- 서영숙 외 2명(2001), "방과후 아동지도론", 서울, 양서원
- 서영숙(1996), "종합사회복지관과 보육기관에서의 방과후 프로그램",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제10권
- 이 옥(1993), 도시지역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양옥승(편), 탁아연구II. 7-32, 서울 : 양서원.
- 이 옥(1994), 국민학교 저학년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의 방향, [우리탁아의 질 어디로 가야 하는가-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토대로]삼성복지재단 어린이 개발센터 국제학술대회 자료, 107-128.
- 이 옥(1995), 학령기 아동을 위한 방과후 탁아프로그램 연구, 아동학회지, 16(1).
- 이기범(1999), 공동육아운동. 마음의 숲 수요 교육 강좌.
- 이종태,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1999). 마음의 숲 수요 교육 강좌.
- 임선하(1993), "창의성에의 초대", 서울 : 교보문고.
- 정두희(1998), "창의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서울 : 학지사.
- 조해숙(2000), 방과후 아동지도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만족도,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 차경선(2001),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주요 3개시 중심으로- 한일창신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대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5), 방과후 아동지도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수실,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팀.
- 한국여성개발원(2003), 여성정책포럼
- 황진수(1990), 현대복지행정론, 브로컨모로.

<외국문헌>

- Bunad, S. L., Aschbacher, P. P., & Mccrosky, J.(1984), Direct services for school-age children, Boston : Auburn House.

- Costin, L. B.(1974), Child welfare policies and practice. New York : McGraw-hill.
- Day, M. A(1990), telephone intervention for latchkey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tate University.
- Halpern, R.(1992), The role of after school programs in the lives of inner city children : A study of "Urban Youth Network". Child Welfare, 71(3). 215-230.
- Kadushin(1980), alfred (ed.).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 Kadushin, A., & Martin(1988), J. A. Child welfare service, Now York : Macmillan.
- KoblinSky, S. Vaughn, G. & Schrage, J.(1990). Project Home Safe : A national initiative on behalf of children in self-care, Journal of Home Economics. 82(1), 27-45.
- Leavitt, R.& Eheart, B.(1991).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programs. Young Children. 46(4),4-9.
- Long, L & Long(1982), T. Latchkey Children : the Child's view of self care. Washing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11 229.
- Moshman, D., Golver, J. A., and Bruning, R. H(1987). Developmental Psychology, Little Brown Co., Boston.
- N. Gilbert & H. Specht(1974),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N.J. Prentice Hall, Inc.
- Posner, J.& Vandell, D.(1994). Low-income children'after school care :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 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 440-456.
- Steinberg(1986), Latch child and susceptibility to peer Pressure : An ecologic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 Theorson, Georle and Theodorson, Lucille(1987). Sociology Principles and Application, West Publishing Co., St., Paul
- Todd. C, Albrecht K. & Coleman M.(1990). School-age child care : A continuum of options, Journal of Home Economics, 82(1), 46-52.
- Vandell, P., & Corasanti, M.(1988). The relation between third graders' after school care and social, academic and 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59, 168-177.
- Warnock, M.M.(1992). After-school child care : Dilemma in a rural community, Children Today, 21(1), 16-19.
- Woods, M. B.,(1972), The unsupervised child of the Working mother. Developmental Psychology.
- Zill(1983), H. L. American Children : HAPPY, Healthy, and Insecure.

ABSTRACT

A Study on Activation of After-School Guidance of Children

Chang, Kwul-Soon³⁾

As our Constitution specifies "children, like adults, have dignity and human value and rights to pursue their happiness", our adults are responsible for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where children can experience anything happily. For children must be our future and hope.

Recently, due to the changing family structure, children ar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natural community life with parents. As a result, many of them are easily exposed to various delinquent environments, causing a great social problem.

Since 1970's, children living in urban slums began to be protected and guided after school by community social service people or volunteers. Currently, various programs for the welfare of housewives or working mothers with pre-school or school children are operat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For example, social welfare centers, private study rooms, elementary schools and toddlers'/infants' nursing facilities are guiding the children after school by using their own programs, but most of these organizations suffer from poor operational budget and shortage of professionals.

3) Major in Social Welfare Studies Dept of Social Welfare Studi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In conclusion, the programs for guidance of children after school seem to be still at their infant stage. In other words, it is urgent to initiate such a program on a full scale, and thereby, help children experience interesting and happy after-school hours and develop a sound personality.

In order to help children experience happy hours and create a sound children's culture, all members of the community should combine their efforts. If an effective program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sponsorship from government and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with the participation of strong community and business groups, after-school guidance for children would be dramatically promoted.